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. 6. 9 선고 2020가단8450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

피 고 A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석
변 론 종 결 2022. 5. 19.
판 결 선 고 2022. 6. 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3/9 지분에 관하여 2019. 9. 3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4,596,0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3. 5. 31. B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, 기한 내에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보증채무 중 미이행 채무액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소정 보증요율에 0.5%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,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법적절차비용(대지급금)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
보증금융기관	보증일	대출금액	주채무자
대출과목	보증기한	보증금액	
C은행 광양중동지점	2013. 5. 31.	100,000,000원	B
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	2014. 5. 30.~2020. 5. 22.	90,000,000원	

나. B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2019. 12. 31.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, 원고가 2020. 9. 7. C은행에 77,648,439원을 변제하였는바, 미수위약금이 403,660원이고 채권집행보전비용이 862,836원이며,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2012. 12. 1.부터 2019. 3. 31.까지는 연 10%, 2019. 4. 1.부터 현재까지는 연 8%이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3/9, D, E, F이 각 2/9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, B은 2019. 9. 3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B 소유의 3/9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2019. 9. 6.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. 11. 28. 채권최고액 312,000,000원, 채무자 B,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(이하 '소외 저축은행'이라 한다)로 된 근저당권이, 2018. 11. 28. 채권최고액 71,500,000원, 채무자 B, 근저당권자 소외 저축은행으로 된

근저당권이 각 마쳐져 있었는데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근저당권들이 각 말소되었다.

라.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50,000,000원이고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. 9. 3. 기준 소외 저축은행 명의 위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권액 합계는 286,211,989원이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G저축은행 선릉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가 B에 대하여 합계 78,914,935원 상당의 구상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,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/9 지분을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위 1. 라.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는바,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50,000,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86,211,98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63,788,011원 중 B의 지분 3/9에 해당하는 54,596,003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(가액배상)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.

나. 판 단

(1)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.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,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,

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.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,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(대법원 2013. 7. 18.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

(2)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D, E, F이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·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 B 소유 지분(3/9)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인 286,211,989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,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 B 지분의 시가 150,000,000원(= 450,000,000원 × 3/9)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허정룡

별지